##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8 발의연월일: 2024. 7. 22.

발 의 자:김미애·이종배·안철수

김기현 • 박준태 • 임이자

조경태・김 건・송언석

유용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 (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6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7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의 제한) ①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학생의 등교일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당이 학교에서 자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를 포함한다. 이하 "정당 홍보활동"이라 한다) 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1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 제한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한 자
  - 2.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정당 홍보활동을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7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
	의 제한) ①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학생의 등교
	일에 「초·중등교육법」 제 <u>2</u>
	조에 따른 학교(학교 담장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당원을 모집
	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
	<u>니 된다.</u>
	② 정당이 학교에서 자당의 정
	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토론회
	를 포함한다. 이하 "정당 홍보
	활동"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 &lt;신 설&gt;</u>	제61조의2(학교에서의 정당 활동
	제한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u>
	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기 위
	한 활동을 한 자

2. 제3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
나하고 학교에서 정당 홍보활
동을 한 자